

제322회

임시회
2024. 5. 23.(목)

산업위원회 안건

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차 례

1.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1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12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5. 14.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9
----------	---------

제출년월일 : 2024. 5. 14.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관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취소·사후관리·환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사항(안 제24조제4항, 제5항)
 - 보조금지원 기업의 투자 이행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설정 단서 삭제
 - 보조금지원 기업 사후관리 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
- 지원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1항제1호, 제10호)
 - 투자보조금 지원 받은 후 투자 사업을 영위토록 단서조항 신설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첨 부 1.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4조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시설투자비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급한다.”로 한다.

제23조의2 중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4항 본문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를 “투자보조금의 선지원에 따른 지원금 손실예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지원 등의 취소 등)”을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의 예”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1.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0. 제2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28조의 제목 “(보조금 지급 등)”을 “(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이전기업”이란 합은 별표1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p> <p>4. ~ 15. (생략)</p> <p>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0조의6(관광산업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3</p>	<p>제2조(정의)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이하</u> ----- -----.</p> <p>4. ~ 15. (현행과 같음)</p> <p>제4조(설치) ----- ----- ----- ----<u>(이하</u> ----- -----.</p> <p>제5조(구성 등) ① ----- ----- ----- ----- -----<u>(이하</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6(관광산업 투자 지원) ① -----</p>

조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자당 최대 균비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23조의2(지원절차)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24조(보조금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 제외하고, 시설 투자비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지원절차) -----
제23조까지-----

제24조(보조금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투자보조금의 선지원에 따른 지원금 손실예방을 위하여 -----

한다. 단, 보증보험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2. ~ 9. (생략)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

---. <단서 삭제>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취소 및 환수 등) ①

-----.

1.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 9. (현행과 같음)

10. 제2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②-----

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
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
금 지원기준」 및 「영동군 지
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
다.

----- 「지방자치단
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8조(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
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미래기획실 경제과장 김 병 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5. 14.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0
----------	---------

제출년월일 : 2024. 5. 14.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휴양림 주중 이용자에게 영동사랑 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
-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가구, 장애인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정비
- 효과적인 운영매니저 운영을 위해 성과금 지급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영동사랑 상품권 지급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임신부 및 다자녀가구 구성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액 기준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제7항)
 - 임신부 및 다자녀가구, 중증장애인 : 30% 감면
- 임신부 및 다자녀가구, 중증장애인 우선예약 시행(안 제8조제2항 단서)
 - 예약 게시일 5일전부터 우선 예약
- 운영매니저 성과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9조의2제2항)
-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물 이용에 따른 제한 및 준수사항 신설(안 제13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1조의6

- 첨 부 1.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사업계획 3부.
 4. 비용추계서 1부.
 5.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등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다자녀가구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임신부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⑨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약 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제9조제3항을 제9조의2제1항으로 신설하며, 제9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매니저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입장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등을 개·보수 할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4.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등의 관리에 필요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등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등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별표 2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등의 산책 및 탐방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차량을 이용한 출입은 금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삭 제</u> 2. <u>삭 제</u> 3. <u>삭 제</u> 4. <u>삭 제</u> 5. <u>삭 제</u> 6. <u>시설사용료 : 휴양림등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u> 7. <u>삭 제</u> 8. <u>삭 제</u> 9. <u>삭 제</u>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설사용료”란 휴양림등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 2. <u>“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u>
<p>제4조(시설사용료 등) ① (생략)</p> <p><u><신 설></u></p> <p>③ <u>삭 제</u></p> <p>④ · ⑤ (생략)</p>	<p>제4조(시설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다자녀가구가 시설을 사용할</u></p>

<신 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생략)

② 휴양림등의 시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며, 사전 계약이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경우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⑥ 임신부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⑦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⑧ ----- 제7항-----
-----.

⑨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약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9조(위탁관리) ①·② (생략)

③ 군수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매니저로 둘 수 있다.

1.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2.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박사학위, 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휴양림 운영과 활성화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운영매니저) ① 군수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매니저로 둘 수 있다.

1.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2.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박사학위, 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휴양림 운영과 활성화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매니저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입장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

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등을 개·보수 할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4.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등의 관리에 필요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등에서 영
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
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등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별표 2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등의 산책 및 탐방
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일출 전
과 일몰 후에는 이용할 수 없으
며, 차량을 이용한 출입은 금지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휴양림 운영매니저 운영
 - 역할 및 사업내용
 -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등 홍보, 브랜드 구축 및 활성화 마케팅전략 수립
 - 휴양림 및 치유센터를 활용한 영동군 생활인구(문화, 산골마을 체류형 관광, 치유여행 등)증가에 기여
 - 운영매니저 운영결과(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매출액 10%이내)
- 자연휴양림 이용자 상품권 지급
 - 운영방법
 - 숙박 이용 금액(실 결제금액)의 50%를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입실 시 지급
 - ※ 주중(일~목) 이용객에 한하여 지급('24년 시범운영 후 확대시행)
 - 시행일시 : 2024년 7월 부터

2. 비용 발생요인

- 운영매니저 운용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주중 이용자에게 상품권 지급

3. 관련조문

- 조례 제9조2제2항 운영매니저 성과급 지급
- 조례 제4조제2항 상품권 지급

4.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휴양림 운영매니저 운용

○ 민주지산 휴양림 현황

- 1. 휴양림/치유센터 관련 숙박시설 : 총 45개소(43개소 운영)
 - 휴양림 : 산림휴양관 등 37개소
 - 치유센터 : 맞이방 포함 8개소

II. 민주시산 휴양림 가동현황

연도	가동가능수량			실제 가동량(동실)			가동률(D/A)*100	주말·주중 가동률		운영 동 실수				비고
	계 A	주말B	주중C	계 D	주말E	주중F		주말 가동률(E/B)*100	주중 가동률(F/C)*100	소계(동실)	숲속의집(동)	휴양관(실)	연립동(실)	
2017년	14,450	4,073	10,377	5,422	2,797	2,625	38	69	25	501	393	108		
2018년	14,596	5,074	9,522	6,548	3,322	3,226	45	65	34	504	396	108		
2021년	3,317	1,051	2,266	1,221	667	554	37	63	24	129	15	48	66	
2022년	9,851	4,618	5,233	2,926	2,072	854	30	45	16	43	5	16	22	제외
평균							38	61	25					

○ 숙박요금(2021년도 기준)

- 주말 및 성수기

- 계절성수기 : 45일(7월 15일 ~ 8월 29일)
- 주말성수기 : 86일
- 공실율 : 37%
- 성수기 숙박요금 : 45,000원 ~ 200,000원 -----
총 131일*(평균)130,000원*43개소*37%≒270,947(천원)

- 비수기

- 비수기 : 234일
- 공실율 : 76%
- 비수기 숙박요금 : 25,000원 ~ 100,000원 -----
총 234일*(평균)60,000원*43개소*76%≒458,827(천원)

2) 자연휴양림 이용자 상품권 지급

■ 상품권 구입금액 계산

구분	객실수	가동율	평일수(7~12월)	평균이용료(기존감면율 적용)	추가감면율(상품권 지급)	감면액(천원)
주중(일~목)	43실	× 45%	× 125일	× 49천원	× 50%	= 59,259

✓ 이 용 료 : 평균 이용료(70천원) × 기존 평균 감면율(주중 30%) 적용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군비

라.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 농산업건설국 산림복지과장 진상백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0
○						0
세 출	71,259	196,260	196,260	196,260	196,260	856,299
○ 운영 매니저 성과급 지급	12,000	73,000	73,000	73,000	73,000	304,000
○ 영동사랑 상품권 구입	59,259	123,260	123,260	123,260	123,260	552,299
재원조달	71,259	196,260	196,260	196,260	196,260	856,299
국 비						
도 비	29,630	61,630	61,630	61,630	61,630	276,150
군 비	41,629	134,630	134,630	134,630	134,630	580,149
기 금						
그 밖의 재원 (지방채, 민자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2제1항에 따른 의사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